

企業環境의 變化와 새로운 銀行-企業關係의 摸索

南 相 祐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情報管理 및 監視, 도산위기시의 救濟努力 등을 통해 기업의 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與信管理, 政策金融 등 지나친 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自生的·協調的인 結속關係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銀行不實債權의 株式轉換, 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株式相互保有를 통한 結속關係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對內外競爭의 심화, 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規模나 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競爭的인 關係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良好한 大企業과 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傳統的인 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中小企業과도 고객關係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들 기업의 會計 등 經營透明性的의 缺如는 장기적인 結속關係를 형성해 가는 데 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I. 序 論

銀行과 企業간의 關係는 기업의 資金調達 및 投資行態에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 金融資金配分의 효율성 및 經濟成果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要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은행이 고객기업과의 장기

적인 去來關係를 통하여 情報管理 및 監視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기업의 資本調達費用을 낮추어 投資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倒産危機 등 어려움에 처할 때 대출은행이 救濟努力을 기울여 준다는 기대가 있다면 기업은 危險性이 크고 懷妊期間이 긴 투자를 과감히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 와서 金融機關의 역할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情報 및 監視의 중요성이 강

筆者：本院 先任研究委員

조되고 있다.¹⁾ 기업의 株式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주주와 경영자간의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監視와 統制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決濟計定 등을 통해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銀行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거래기업과 長期的인 結束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情報를 기초로 효과적인 監視·統制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atrick(forthcoming)은 日本의 主去來 銀行關係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監視機能에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企業에 대한 情報를 늘리고 信用評價機能을 향상시킴에 따라 貸出에 있어서의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주거래은행관계는 間接金融에 있어서의 代理人 문제를 완화하며, 情報의 불안전성과 非對稱性 문제를 극복하고 直接金融에 따르는 기업의 信用制約問題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shi, Kashyap, and Scharfstein(1991)은 日本 企業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여 銀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에 있어 流動性的의 제약을 적게 받는 것을 밝혔다. 둘째, 주거래은행관계가 위기

에 빠진 기업의 組織再編이나 構造調整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비용이 破産節次를 통한 美國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 낮았다는 점이 여러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Sheard(1989)는 주거래은행이 日本에 존재하지 않는 企業買收 및 監視의 市場을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日本의 경우 西歐에 비해 會計情報가 미비하며 평생고용에 따라 경영자의 기업간 이동이 적고 의사결정이 合意指向的임에 따라 특정기업에 대한 監視費用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은 기업과의 긴밀한 情報共有를 통해 西歐의 信用評價機關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졌을 경우 主去來銀行이 긴급자금지원이나 이자탕감 등과 같은 危險分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영진의 교체와 같은 적극적인 經營支配를 행사하는 것은 英·美의 企業買受市場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illiamson(1975)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으로 인해 경영지배에 있어 企業引受市場의 효율성이 크게 제약된다고 주장하였다. Sheard(1989)는 기업의 倒産危機時에 主去來銀行이 상대적으로 큰 위험분담을 하는 것은 다른 債權銀行들의 代理人으로서 기업을 감시함에 따르는 代理人費用을 줄이기 위한 유인장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獨逸의 銀行-企業關係와 관련해서도 Ca-

1) Leland and Pyle(1977), Diamond(1984), Ramakrishnan and Thakor(1984), Stiglitz(1985, 1991), Williamson(1986), Aoki(1990) 등 참조.

ble(1985)은 獨逸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企業經營에의 銀行의 干與程度와 기업의 財務的인 實績간에는 상당한 正의 상관계수가 존재함을 밝혔다. Cable은 이를 은행이 단순한 信用供與의 차원을 넘어 情報의 비대칭성과 경영진과 주주간의 代理人問題를 완화해 주는 內部資本市場(internal capital market)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고객기업에 대한 情報의 관리, 企業危險의 分擔, 企業경영의 監視·統制 등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은행여신이 정부의 產業政策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 됨으로써 은행경영의 自律性, 특히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이 크게 저해된 데 기인한다. 지난 70년대에 도입된 여신관리제도의 틀 안에서 主去來銀行은 대규모 기업군 등에 대한 財務上의 지도와 감독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당국의 監督機能의 일환으로 부과된 同 制度는 은행-기업간의 自生的인 協調關係를 발전시켜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여신관리제도 밖에서의 은행과 고객기업의 實際的인 關係를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結束關係에 기초한 효율적인 監視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향후 金融自律化 및 開放化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은 貸出審査機能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의 협조적인 結束關係를 심화시켜 갈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本稿의 第Ⅱ章에서는 이와 같은 은행-기업간의 바람직한 關係形成을 저해해 온 우리 金融市場의 特性을 살펴본다. 第Ⅲ章에서는 여신관리제도하의 主去來銀行制度, 實際的인 主去來關係가 기업에 미치는 經濟的인 效果,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은행-기업관계를 評價해 본다. 第Ⅳ章에서는 향후의 企業環境變化가 은행-기업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第Ⅴ章에서는 英·美, 독일, 일본 등에서의 은행-기업관계의 類型을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第Ⅵ章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은행-기업관계의 展望 및 바람직한 發展方向과 관련된 몇가지 側面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韓國經濟發展過程에서의 金融의 役割과 特性

은행-기업관계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經濟發展戰略과 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金融의 役割과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規制制度의 土壤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金融制度의 가장 큰 特徵의 하나는 국가의 經濟發展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가 金融機關, 특히 銀行의 경영에 깊숙이 간여해 옴으로써 이들의 自律的인 成長이 저해되었다는 점이다. 우

리나라 금융의 여러 特性들은 바로 이러한 特徵에서 派生되었다. 産業支援을 위한 低金利의 유지는 銀行의 성장과 금융저축동원을 제약하고 私金融市場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금융의 二重構造를 완화하고 금융저축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非銀行 금융시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비해 훨씬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였다. 규제금리하의 産業高度化 추구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企業群에의 與信集中을 초래하였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與信管理制度가 도입되었다. 금리보조적 성격이 큰 은행여신의 주된 受惠者가 대규모 기업군인 현실에서 民間의 銀行所有集中이 규제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金融抑壓(financial repression) : 60년대 이래의 輸出支援, 70년대에 두드러졌던 重化學工業의 육성, 근래에 와서는 住宅·中小企業 등을 위한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重化學工業의 육성은 변화하는 국제교역환경에 대응하여 輸出構造를 고도화하고 防衛能力을 擴大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金利나 資金運用面에서 정부의 干與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石油波動 등이 가세한 높은 인플레이하에서 은행금리는 종종 인플레이율을 下廻하였으며, 70년대 말경에는 政策金融이 예금은행 총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80년대 이후에 金融自律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70년대의 遺産을 정리하는 데

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開放化되고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企業과 農村의 構造調整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政策金融을 크게 축소하는 것은 어려웠다. 80년대 중반을 「피크」로 하여 많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은행의 不實債權도 金融自律化와 競爭促進의 발목을 잡고 있다. 金利를 전면 자유화할 경우 기업의 차입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財務構造가 취약한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貸出審査機能을 劃期的으로 제고하고 金融革新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非銀行 金融市場의 成長 : 은행금리의 규제는 전통적인 은행저축과 대출재원을 크게 제약하고, 금융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私金融市場을 확대시켰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70년대 초에 短資會社, 相互信用金庫, 信用組合 등 非銀行 금융기관들이 신설되었다. 이들은 우리 금융시장의 多樣化와 金融深化를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銀行에 비하여 金利, 資産運用, 內部經營, 所有權 등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이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非銀行 금융시장의 比重을 꾸준히 증대시켜 온 요인이 되었다. 총국내금융자산 중 總通貨(M2)의 比重低下는 M2위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企業金融에 있어서 銀行의 상대적인 역할이 그만큼

〈表 1〉 金融貯蓄의 構成比(%)

	1972	1980	1990	1993
저축성예금	70.0	45.9	22.7	19.9
양도성예금	0.0	0.0	2.9	4.0
비은행저축	22.2	37.8	60.3	68.3
(보 험)	5.2	6.1	13.0	12.3
(금전신탁)	12.2	5.6	13.2	19.0
(단기금융)	0.3	11.2	9.5	7.7
(상호금융)	1.9	5.2	6.1	7.2
(투자신탁)	0.0	3.4	9.6	11.4
국 공 채	9.3	4.8	6.3	6.7
주 식	3.1	7.2	13.3	9.3
회 사 채	0.8	9.8	10.3	9.7
부문간거래(-)	5.4	5.5	15.8	17.9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銀行에 금전신탁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受信基盤이 다소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상업어음매출, RP, 팩토링 등 새로운 업무가 허용되었으나, 이는 80년대 이후 新金融商品이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非銀行 금융기관과의 업무분할의 결과라고 하겠다. 規制의 정도가 약한 非銀行 금융기관의 상대적인 高成長으로 인해서 金融市場 전체의 自由化 및 效率性이 제고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 産業政策을 뒷바라지하느라 크게 矮小해진 銀行의 어려움을 방지한 것은 향후의 건실한 金融發展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與信管理制度 : 여신관리 및 主去來銀行制度는 大企業들이 銀行借入 대신 유상증

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財務構造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74년에 도입되었다. 主去來銀行은 고객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검토·감시하고,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정하며, 경영정보 및 경영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부동산이나 他企業에의 투자를 규제하는 데 역점이 두어졌다. 大企業의 문어발식 확장은 더 이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과 87년 이후 民主化過程에서 표출된 分配衡平에 대한 욕구는 大기업의 經濟力集中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이는 여신관리제도에 있어서도 5大, 30大 企業群에 대한 與信比率規制(바스켓管理)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元貨切上의 여파와 빠른 임금상승, 국내시장 開放擴大 등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國際競爭力이 크게

〈表 2〉 5大企業群의 銀行 및 第2金融圈 株式保有 現況(1993년말)

		삼 성	현 대	대 우	력키금성	한 진
5개시중은행·	은행수	5	3	1	2	1
	평균지분율	4.7	2.3	1.2	3.6	1.0
기타시중은행	은행수	5	1	2	2	1
	평균지분율	2.8	3.2	6.3	6.0	1.7
지방은행	은행수	3	2	1	2	1
	평균지분율	2.3	11.3	1.4	1.0	7.7
증권회사	회사수	1	1	1	1	1
	평균지분율	20.4	25.3	11.3	11.7	50.8
생명보험회사	회사수	1	—	—	—	—
	평균지분율	39.2	—	—	—	—
기 타	회사수	2	2	—	4	2
	평균지분율	57.3	30.5	—	45.8	27.2

資料 : 財務部, 「第170回 定期國會 財務委員 要求資料」, 1994.

약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설투자 등 기민한 對應이 필요한바, 여신관리제도가 이를 制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군마다 기본적으로 2~3개의 主力業種을 선정토록 하여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專門化를 촉진하고 있다.

銀行所有權의 規制 : 80년대 초에 市中銀行이 民有化되기까지 政府는 이들 은행의 株式을 상당분 보유하였다. 民間株主의 경우 議決權이 최고 10%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政府는 大株主로서 은행경영을 장악하였다. 政府주식을 賣却하면서 대규모 企業群의 은행지배를 우려하여 단일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소유비율을 최고 8%로 제한하였다. 民有化 초기에는 기업들이 거래은행의 주식소유에 다소 관

심을 가지는 듯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관심은 오히려 퇴조한 것으로 보인다. 大企業群의 경우 與信管理制度에 따라 차입규제를 받는데다 銀行長 등 주요 임원들을 사실상 政府가 선임한 것도 은행주식소유의 誘因을 감소시켰다고 하겠다. 한편 대규모기업군의 은행지배는 경제력집중이나 利害相衝問題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非金融業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격한 所有規制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金融專業 企業家에게는 銀行株式의 所有上限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所有規制는 銀行에 국한되고(地方銀行은 15% 上限) 증권회사 등 第2金融圈에는 적용되지 않아 衡平上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일부 企業群들은 증권회사·단자회사

· 생명보험회사 등 非銀行 金融기관에 높은 持分率을 가지고 있다.

Ⅲ. 銀行-企業關係의 評價

우리나라 銀行-企業의 關係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與信管理制度下에서 그 대상이 되는 대규모 企業群과 이들의 主去來銀行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去來銀行關係는 여러 유형의 기업들과 은행간의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일부분을 형성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中小企業을 포함하여 與信管理對象 외의 기업들과 은행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主去來銀行制度

우리나라의 大企業群과 시중은행간의 主去來銀行關係는 이들간에 自律的·自生的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고 金融監督當局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진 관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의 役割 및 대상기업과의 關係도 외부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가. 主去來銀行의 機能

貸出提供 :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군의 주요 貸出先인 것은 사실이나 전체 자금수

요 중 일부분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며, 주거래은행이라 하여 반드시 最大의 대출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주거래은행은 때때로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은행들과 함께 借款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主去來銀行은 여타의 참여은행들을 대신해서 이 사업의 監視者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거래은행의 監視機能 및 結束關係를 제약하고 있다.

매년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에 연간 投資 및 資金調達計劃을 제출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주거래은행의 影響力이나 統制力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래은행이 특정 투자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투자를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대기업의 投資計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產業銀行으로 알려지고 있다. 產銀은 주거래은행의 기능은 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대규모 設備投資資金의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企業信用·經營情報의 管理 : 주거래은행은 고객기업의 해외지사의 現地金融을 포함하여 기업전반의 信用狀態를 감시한다. 其他銀行과의 거래관계정보는 통상 金融團 電算網을 통해 파악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차입이 있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이 電算網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非銀行 금융기관의 대출상황은 부분적으로만 이 전산망에서 입수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자금조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企業財務構造 改善 誘導 : 주거래은행은 외부자금조달과 운용 등에 대해 고객기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銀行監督院이 업종별로 정한 自己資本 指導比率에 입각해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주거래은행은 신규대출을 제한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보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토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재무구조개선 및 기타의 經營指導는 그 實效性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고객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한계가 있어 주거래은행의 지도 및 영향력이 그만큼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不動產取得 및 企業投資 規制 : 93년까지는 여신관리대상 기업들이 신규 企業投資(신설, 매수, 합병 등)나 不動產取得을 하려 할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事前承認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은 기업들의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고 차입에 의존한 사업분야확장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을 할 때에는 대개 투자금액의 200~600%에 달하는 自救努力(보유 부동산·유가증권의 매각, 유상

증자, 대주주 지분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94년에는 이러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오직 10大 企業群만이 주거래은행에 事後報告하도록 되었으며, 自救努力도 투자금액의 100% 혹은 200%로 경감되었다.

不實企業의 處理 : 일반적으로 大企業이 부실화되었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債權銀行의 역할은 크지 못한 편이었다. 대기업의 파산·정리는 다른 기업들의 연쇄파산을 가져와 大量失業을 발생시키고, 국제금융 시장이나 수출시장에서 한국기업의 信用度에 영향을 미치며, 銀行에도 막대한 損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부실은 상당분 정부의 產業政策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正常化努力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產業合理化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주도의 기업정리가 추진되었을 때에 主去來銀行은 引受候補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과 일차적인 인수조건을 협의하는 이외의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나. 主去來銀行制度的 評價

우리나라의 主去來銀行은 대규모 기업군에 대한 與信管理制度에 의해서 그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제도에 대한 評價는 우선 여신관리제도가 추구하는 ① 企業財務構造의 개선, ② 經濟力集中 및 偏重與信의 완화, ③ 업종전문화에

의한 産業競爭力의 제고 등 目標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企業財務構造의 改善 :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군의 財務構造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 制度가 도입된 74년 이후 重化學工業化를 강력히 추구하면서 製造業 大企業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金利規制 등으로 인해 기업의 超過資金需要가 컸기 때문이다. 80년대 後半에 여신관리대상인 30大 기업군의 自己資本比率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86년 17.4%, 89년 23.8%, 91년 19.4%) 이는 주로 1987~89년 간의 주식시장 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經濟力集中 및 偏重與信의 緩和 : 84년에 바스켓管理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군에 대한 은행의 偏重與信은 크게 완화되었다. 총은행대출에서 30大 기업군이 점하는 비중은 86년에 28.6%에 달했으나 93년에는 15.6%로 낮아졌다. 그러나 그 대신 이들 기업군은 여신관리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단자·종금·보험 등 非銀行 금융기관 차입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금융기관 총대출 중 30大 기업군의 점유율은 87년의 37.9%에서 90년에는 43.6%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系列企業數를 증가시켜 온 것을 볼 때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군의 문어발식 擴張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다.

製造業의 競爭力提高 : 91년에 기업군들로 하여금 일정수의 主力企業을 선정토록 하여 이들을 與信管理對象에서 제외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競爭力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후 主力企業들에 대한 은행대출은 非主力企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런데 이들 주력기업은 향후의 事業展望보다는 석유화학 등 資金需要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또한 運轉資金의 경우 은행차입금의 사용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력기업과 비주력기업 간의 자금의 轉用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계열기업들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相互支給保證도 사실상 이들간의 자금전용의 성격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관리제도를 통한 專門化와 競爭力強化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銀行-企業간의 關係發展 : 여신관리제도는 은행의 自律的인 經營과 은행-기업간의 바람직한 關係를 발전시켜 가는 데 제약이 되어 왔다. 주거래은행은 銀行監督院과 大企業群의 사이에서 기업의 여러 활동을 감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감독원에 보고한다. 이러한 주거래은행으로서의 業務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을 어길 경우에 은행은 中央銀行借入을 제한받거나 벌칙금리를 부담하도록 되어 왔다. 여신관리제도의 은행-기업관계는 監督-被監督의 관계로 규정되고,

그 감독기능도 規定에 합치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양자간 상호의 필요에 의한 自發的이고 協力的인 관계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自生的인 관계라기보다는 外部的으로 부과된 제도들 속에서 規定遵守를 둘러싸고 은행과 기업이 잦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相互信賴에 바탕을 둔 結束關係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2. 實際的 主去來銀行關係의 經濟的 效果

主去來銀行의 역할이 여신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制度的으로 강제된 것이라면, 은행대출의 80% 이상을 점하는 여신관리대상 이외의 企業들과 銀行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宋貞煥(1994)은 분석을 위하여 與信管理制度下에서 규정된 주거래은행이 아니고 기업의 은행차입에 있어서의 實際的 主去來關係銀行을 새롭게 定義하고 있다. 즉 主去來關係銀行은 특정기업에 대한 最大貸出 은행이면서 동시에 이 기업에 대한 총 은행대출금 중 占有率이 일정수준 이상인 은행으로 파악하였다. 250개의 標本企業(上場 제조업)을 이렇게 정의된 주거래관계은행의 상대적 重要性(依存程度)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主去來關係銀行을 확실히 갖고 있던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서 資本코스트나

銀行借入의 安定性面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현실의 금융·자본시장은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시장이다. 따라서 기업에 外部資金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의 倒産이나 경영자의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일정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때에 기업과 긴밀하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기업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행동을 監視하는 主去來關係銀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이 기업의 資本코스트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래관계은행은 고객기업이 倒産하게 되면 채권은행으로서 損失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監視를 소홀히 한 데 따른 評判의 손상이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래관계은행은 고객기업에 대해 貸出金利나 貸出規模의 變動에 대한 리스크를 分擔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 계속적으로 主去來關係銀行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借入金 平均利率 및 實效利率이 낮았다.
- 그러나 이러한 主去來關係가 기업의 投資活動에 있어서 기업 內部資金의 制約을 완화시켜 주는 데 특별히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이들 기업은 차입금 平均利率

및 實效利率의 變動이 상대적으로 작아 主去來關係銀行이 고객기업의 金利變動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계속해서 주거래 관계은행을 갖고 있었다라도, 주거래 관계은행으로부터의 借入金이 기업 全體借入金規模의 變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니다.
- 기업의 金融費用이 營業利益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은행은 어느 정도 고객기업의 營業成果變動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실하게 主去來關係銀行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여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기업의 資金事情이 악화된 경우라 하여 主去來關係銀行의 고객기업에 대한 借入コスト引下 및 營業成果變動 리스크의 緩和(금융비용 조정)機能이 특별히 더 나타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主去來關係銀行을 가졌던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借入金利率의 低廉化 및 金利變動의 緩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밖에 특이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계속해서 주거래 관계은행을 가졌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規模가 큰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차입금리수준

및 그 변동 정도는 부분적으로 主去來關係銀行의 존재보다는 표본기업의 大規模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은행과 기업간의 貸出面에서 본 主去來關係가 별로 安定的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1985~92년간 매년 主去來關係銀行을 갖고 있었던 60個社에서만 보더라도 이 기간중 주거래 관계은행이 바뀌지 않은 것은 34個社에 불과했다. 7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40% 이상의 기업에서 主去來關係銀行(최대대출 은행)이 변경된 것은 實際적으로 주거래 관계가 長期的인 結束關係로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위 60個 기업 중에서 표본기간중 계속적으로 與信管理對象이었던 企業은 26個社였는데, 그중에 8個社만이 主去來關係銀行에 변함이 없었다.

3. 銀行과 中小企業의 關係

우리는 위에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主去來關係銀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떤 影響(借入コスト 절감, 리스크 분담 등)을 미치는가를 살폈다. 이 분석은 上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標本은 대부분 大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과 中小企業의 전형적인 關係는 어떠한가?

中小企業은 그 성격상 은행과 長期的인 結束關係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소

〈表 3〉 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中小企業			大企業		
	1980	1990	1993	1980	1990	1993
內部資金	11.9	27.5	37.9	9.2	32.3	56.0
外部資金	88.1	72.6	62.1	90.8	67.7	44.0
- 直接金融	11.3	10.6	7.8	13.5	16.9	21.4
· 增資	10.6	8.8	6.4	7.0	4.6	5.9
· 會社債	0.7	1.8	1.4	6.5	12.3	15.5
- 間接金融	37.3	38.1	29.8	45.5	30.2	13.8
· 銀行	29.7	32.1	23.8	27.8	22.3	9.3
· 海外	1.6	-0.1	-0.5	12.5	0.5	-1.9
- 其他	39.5	24.0	24.4	31.8	20.6	8.8

資料：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各年度.

기업은 일반적으로 危險性이 커서 향후의 營業展望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事前·事後的인 監視活動에 대한 收益期待가 크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의 會計上의 불투명성, 經營者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評價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情報의 확보 및 효과적인 監視가 쉽지 않다. 더구나 貸出金利가 규제되어 있을 때에는 위험성이 큰 중소기업에의 貸出誘因은 더욱 감소한다.

한편 中小企業의 경우에 은행 등 금융기관차입 이외의 資金調達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한 높은 情報費用 및 소규모 자금조달에 따른 去來費用 때문에 주식·회사채 등 資本市場을 활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海外借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에는 貸出과 관련하여 커다란 交渉力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은 획일적인 金利規制下에서 더욱

심각하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義務貸出比率, 수출어음 및 상업어음 割引 등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우대, 信用保證基金의 활용 등 지원책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들이 은행-중소기업간의 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銀行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交渉力이 劣勢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不合理한 관행이 초래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과도한 擔保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情報의 부족과 극심한 非對稱性下에서 담보는 기업의 道德的 解弛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의 健全性 유지를 목적으로 담보확보를 사실상 조장하는 금융규제 및 제도를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대출은행은 통상 貸出金額의 30% 이상이 가산된 금액만큼의 담보를 설정하

〈表 4〉 中小企業 銀行借入의 擔保別 構成(%)

	1985	1992
信用	-	19.0
不動產	83.7	58.3
信用保證	5.9	19.6
支給保證	4.1	2.9
其他	6.3	0.2

資料 : 國民銀行,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各年度.

며, 담보가치의 評價額은 時價의 2/3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擔保物件에 대하여 保險을 든다든지 기타 담보설정과 관련된 諸費用을 차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담보설정에 더하여 통상 기업주나 과점주주 등의 連帶保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倒産하여 대위변제 혹은 담보처분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延滯金額에 대해서 높은 연체금리가 부과된다.

이러한 담보관행의 問題點은 적지 않다. 담보에 의해 貸出에 따른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 은행은 기업의 사업내용과 신용상태 등에 대한 審査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이 더욱 약화되고 대출이 기업의 事業性보다는 擔保能力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자금배분의 效率性은 그만큼 저하된다고 하겠다. 극단적으로 대출액에 비해 擔保價値가 훨씬 크다면 기업이 償還不能이 되었을 때 은행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危險度가 높은 기업을 貸出先으로 선호할 수도 있다(adverse selection). 대출금리가 자

유화되어 위험도가 큰 기업에 더 높은 金利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이 자금압박으로 차입금의 償還不能危險에 처할 때 채권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고객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금압박이 일시적이어서 回生可能하고 길게 보아서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擔保能力이 없더라도 償還期日의 연장이나 追加貸出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처음부터 擔保에 의존하여 기업의 事業性 등에는 큰 關心을 가지지 않았고 대출후에도 기업에 대한 監視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신속히 이러한 判斷을 할 수 있는 情報와 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망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은행은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어떤 조치보다 倒産을 방치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1991~92년중 構造調整過程에서 중소기업의 不渡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큰 地方銀行의 부실채권

〈表 5〉 中小企業 従業員 規模別 借入金調達 構成比(%)

	銀行(借款 포함)	非銀行金融機關	會社債	私債	其他
〈1985〉					
5~9 인	51.2	6.6	0.0	34.3	7.9
10~19 인	70.5	14.6	0.0	13.1	1.8
20~49 인	78.9	7.7	4.7	7.2	1.6
50~99 인	74.6	13.5	8.6	1.7	1.6
100~199인	78.9	10.8	8.6	0.5	1.2
200~299인	67.2	18.0	13.1	0.1	1.6
〈1992〉					
5~9 인	76.1	11.3	0.0	11.4	1.2
10~19 인	79.0	13.3	0.0	6.7	1.0
20~49 인	80.1	8.8	7.7	2.1	1.3
50~99 인	83.4	12.1	3.4	0.4	0.6
100~199인	75.7	13.3	9.5	0.1	1.4
200~299인	72.0	13.4	13.5	0.0	1.0

資料 : 國民銀行, 前掲書.

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은 不實中小企業에 대한 이들의 救濟努力이 취약했음을 시사한다.

IV. 企業環境의 變化와 銀行의 役割

향후에 있어서의 은행의 역할, 특히 은행과 기업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金融環境의 변화를 먼저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經濟成長은 둔화되는 반면 金融深化는 계속되어 기업자금의 需給狀況이 크게 변화할 것이 확실하다. WTO체제의 出帆과 1996년 한국의

OECD가입 등과 관련하여 金融 및 경제전반의 開放 및 國際化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원천도 크게 다양화될 것이다. 또한 銀行들은 지금까지의 상업은행업무 위주의 협소한 業務領域을 넓혀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地方自治制가 본격 실시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産業支援이 어려워지면서 中小企業들은 각 地域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地域金融機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 經濟成長의 鈍化와 金融深化

향후의 은행-기업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기업이 얼마나 銀行借入에 계속 의존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日本의 경우 70년대에 低成長期로 접어들어 기업의 投資增加가 둔화되면서 優良大企業들은 투자자금의 상당분을 기업 内部資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기업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침체로 기업의 投資活動이 위축되거나 할 경우 「貸出세일」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황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의 향후 成長展望은 어떠한가?

供給側面에서 潛在成長率을 전망해 본다면 우리 경제는 향후 5년간 7% 가까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 2010년까지는 5%대로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勞動力增加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고 勞動時間도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女性 및 老人人力の 활용을 통해서 노동력증가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을 것이며, 高等教育을 받은 勞動力의 구성비가 꾸준히 늘어남으로써 勞動의 質의 향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반의 生産性向上은 당분간 과거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농업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製造業과 서비스部門으로의 勞動力 移動은 이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WTO체제의

출범과 관련하여 산업의 開放과 構造改編이 가속화되어 경제의 體質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의 規制緩和도 민간의 創意와 競爭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效率을 제고할 것이다. 향후에 성장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技術인바, 일부 기업들이 그간의 技術模倣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공격적이며 보다 중장기적인 R&D 전략을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볼 때 반드시 비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이 둔화되어 投資 등 기업의 外部資金需要가 이제까지보다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金融深化는 가속될 전망이다. 70년대에는 강력한 중화학공업육성과 관련하여 金利가 규제되어 석유과동 등의 충격이 있던 기간에는 實質金利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金融發展이 정체되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金融深化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제3단계 金利自由化가 마무리되어 수신금리규제가 대부분 해제되고 新商品開發이 본격화될 것이며, 金融國際化가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금융시장의 多邊化와 金融深化를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成長의 둔화로 기업의 投資需要가 진정되어 大企業을 중심으로 外部資金依存度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金融深化가 지속되면 銀行貸出市場의 超過需要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다.²⁾

2) 우리나라와 같이 海外部門의 비중이 큰 경제에서 기업의 外部資金依存度는 經常收支에도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中東建設特需

〈表 6〉 金融深化 推移¹⁾

(단위 : %)

	對 GNP 比率				總貯蓄率	企業不足資金 補填率 ³⁾
	M2	M3	國內金融資產	金融서비스 ²⁾		
1970	32	37(1971)	212	1.3	18.0	54.8
1980	34	49	240	3.8	23.1	33.4
1990	40	115	422	4.8	36.0	67.1
1993	43	132	463	6.9(1992)	34.9	82.1

註 : 1) 通貨關聯指標는 末殘 기준. 2) 1985년 불변가격 기준.

3) 企業不足資金補填率 = 개인자금 잉여 / 기업자금 부족

資料 :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및 『국민계정』, 各號.

2. 金融開放 · 國際化的 進展

그간 우리나라 金融國際化는 크게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外國金融機關의 國內營業,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證券發行, 外國인의 國內 株式投資와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海外證券投資 허용 등 국제화가 꾸준히 확대되어 오긴 하였으나 아직도 開放의 幅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96년 OECD가입 등을 앞두고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外換 · 資本去來 자유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WTO체제의 출범과 우리 경제의 先進圈進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간 추진해 온 金融自

가 있었던 77년 및 경상수지가 큰 黑字를 보였던 1986~88년간 기업의 資金不足率은 현저히 하락하였다. 資本自由化의 進전에 따른 대규모의 外資流入 및 이로 인한 元貨切上과 經常收支赤字는 당분간 기업의 外部資金依存이 크게 감소하기 어려움을 가리켜주고 있다. 그러나 國內與信依存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律化的 進전을 바탕으로 國際化的 충격을 완화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海外活動, 특히 해외금융시장에서의 저렴한 資金調達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對外競爭力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外換 · 資本自由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變數는 純資本流入規模가 얼마나 크고, 이로 인해 巨視經濟運用에 얼마만큼의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규모의 순자본유입은 元貨切上을 초래하여 수출 및 經常收支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元貨 절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外換市場에 개입할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通貨增加를 민간여신의 축소 등을 통해 흡수(不胎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國內金利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元貨切上期待도 남아 있어 資本流入壓力이 지속됨으로써 이러한 政策對應을 오랫동안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본의 海外流出을 적극 촉진하여 純流入規模를 가급적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국내의金利隔差가 조기에 축소되기 어렵고 外貨切上期待가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응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外換制度改編은 단기간내에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資本去來의 자유화는 통화량·환율·금리 등 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外貨資金調達을 조속히 자유화되 現金借款性格의 외자도입 및 海外債券發行에 있어서는 당분간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비거주자의 國內證券投資는 株式에 이어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순서로 점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며 유통시장보다 발행시장의 자유화가 우선될 것이다. 2000년경까지는 資本去來自由化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信用도가 높은 大企業들은 海外로부터의 저렴한 자금조달을 늘려가고 銀行은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기업과 中堅企業 등을 주된 貸出先으로 갖게 될 것이다.

3. 金融機關 業務領域의 擴大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業務領域擴大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금융시장이 開放되고 國際化되면서 금융기관이 국경을 넘어 타국에 진출하고 저축 투자자들이 타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金融制度는 국제적인 제도와 整合性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兼業主義는 이미 세계적인 뚜렷한 추세이다. 금융혁신과 규제회피노력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商業銀行 및 投資銀行業務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30년대 大恐慌 이후 엄격한 專業主義를 유지해 왔던 美國에서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日本에서도 子會社를 통한 兼業이 허용되었다. 獨逸은 전통적으로 유니버설 銀行을 유지해 왔으며, EU도 兼業主義를 채택하였다.

우리 금융시장에도 兼業主義的인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新規業務가 허용되고,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이 引受하고, 일부금융기관의 轉換·合併過程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不確實性을 완화하여 競爭과 金融革新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金融構造에 대한 方向設定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兼業主義의 이점은 規模의 經濟性과 範圍의 經濟性(economies of scope)이다. 兼業銀行이 범위의 경제성을 갖는 것은 ①顧客關係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점망, 인력, 전산망 등 固定費用이 소요되고, ②고객의 情報管理 및 監視에 필요한 單位費用을 줄일 수 있으며, ③금융상품들간의 代替性을 감안할 때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영

업실적의 安定性을 기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範圍의 經濟性은 標準的인 금융상품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百貨店式의 유니버설 뱅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업무영역을 商業銀行·投資銀行·保險 등으로 대별하고 類似業務 및 利害相衝 가능성이 작은 업무를 중심으로 점차로 相互進出 및 子會社를 통한 兼業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대규모 企業群들이 증권회사, 보험회사, 단자회사 등 非銀行 금융기관을 상당히 所有·支配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지나친 兼業化는 競爭制約 및 利害相衝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비록 금융시장이 競爭的이라 할지라도 非金融部門에서의 市場支配的인 지위를 남용하여 系列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끼워팔기」하려는 유인이 클 것이다. 利害相衝은 금융업무를 兼業할 때 금융기관 자신과 고객간에 혹은 고객들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나, 金融·非金融業務가 동일 기업군 내에서 함께 영위될 때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어떠한 銀行의 業務領域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며, 이것은 은행이 貸出先으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優良大企業과도 顧客關係를 지속해 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證券關聯業務나 國際金融 등 기업이 世界化를 추진해 가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 상호간의 協力關係를 발전

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4. 地方化의 進展과 中小企業의 位相

95년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를 계기로 地方化時代가 다가오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地域開發이나 産業支援施策 등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에 따라 地方經濟의 活性化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中小企業이라고 한다면 지방화시대의 中小企業의 位相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하여 金融機關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중소기업은 현재 아주 脆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높은 人件費로 인하여 低賃에 의존한 勞動集約的 상품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됨에 따라 構造調整이 시급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산업의 兩極化 현상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知識集約的 高價品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품의 差別化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에 地方政府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 중소기업으로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人的·物的·技術的 資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간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서만 相互補完的으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地方政府는 중소기업의 集團化·共同化를 유도하는 立地政策 및 지역기업에 밀착된 각종 지원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地域産業技術의 개발과 활용을 가속시키기 위한 技術開發支援體制도 필수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여 地方經濟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地方政府 못지않게 地域金融機關의 역할도 크다. 이들은 지역에 밀착하여 기업과의 반복적인 거래관계나 관련기업들로부터의 情報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일반적인 정보의 非對稱性과 높은 監視費用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市場機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地方政府의 産業政策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의 지원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金融需要가 지금보다는 점차 多樣化되어 간다고 할 때 이들 지역금융기관들의 業務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銀行, 특히 市中銀行들은 地域密着性에 있어서 지역의 小型 금융기관들에 비해 劣勢에 있으나, 대규모 자금지원 및 업무의 多樣性面에서는 상대적인 優位에 있다고 할 것이다.

V. 銀行-企業關係의 類型

각국에서의 은행-기업관계는 이들 나라의 發展段階와 金融與件下에서의 은행의 역할, 각종의 規制制度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기업과 은행을 둘러싼 環境이 변화하면서 이들간의 關係도 부단히 바뀌어 가고 있다. 外國의 은행-기업관계의 決

定·變化要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들간의 관계를 展望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英·美型의 關係

美國의 은행들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의 高成長期에 주요산업에 대한 주된 信用供給者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最終貸付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은행과 고객기업이 市場을 통해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관계(arm's length market relation)로 변모하였다. 여기에는 두가지 주된 要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들이 자금수요를 대부분 內部資金에 의해 조달한데다 銀行借入보다 會社債가 훨씬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였다. 은행의 資產構成에 있어서도 政府債券, 주택저당증권 등이 오히려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銀行 스스로 기업과의 結束關係로 인해 은행자산의 流動性이 제약되는 것을 원치 않고, 企業들도 은행의 監視와 統制를 싫어하는 性向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로는, 1933년의 銀行法에 의해 상업은행이 自己計定으로 株式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고, 信託計定을 통한 제한적인 주식보유도 의결권이 제한되었다. 銀行持株會社도 은행업무와 밀접한 분야로 활동이 극히 제약되었다. 또한 企業倒産과 관련해서도 고

객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은행일 수록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 파산신청 이전의 債權者들간의 협상은 不法으로 간주되고, 은행이 추가자금지원을 하고도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청구권은 後順位가 될 수 있기 때문에 企業回生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英國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은행과 기업간에 結束關係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産業化를 시작한 영국은 당초부터 銀行에 별로 의존함이 없이 산업화를 진행시켰다. 산업화과정에서 얻어진 利潤으로 산업의 확장에 필요한 産業資本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런던의 金融産業은 産業資本과 큰 관련이 없이 유럽의 金融資本이 집결하여 자생적인 國際金融센터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런던의 금융시장은 世界를 투자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수의 大企業을 제외하고는 영국 기업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들 大型商業銀行들은 단기금융을 주로 취급하여 기업과의 長期的 관계나 監視者의 역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企業株式의 보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英·美에서의 이러한 은행-기업관계가 이들 나라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잘 발달된 美國의 경우, 기업들의 所有가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專門經營者와 株主들 사이에 代理人問題가

심각할 수 있다. 銀行은 그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고객기업의 經營을 효과적으로 監視할 입장에 있으므로 은행의 기업주식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專門經營人은 자기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短期的 成果에 치중하게 되어 長期的인 株主의 이익, 더 나아가서는 산업의 競爭力을 제고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英國에서도 근래에 와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관계를 주도·조정하는 銀行의 역할, 특히 不渡危機時에 추가적 자금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回生을 적극 검토·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 獨逸의 Hausbank

독일의 Hausbank는 고객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기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은행이다. Hausbank는 株式議決權의 代理行使, 監督理事會에의 참여, 부도위기시의 企業救濟機能 등을 통해 고객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英國에 비해 産業化에 뒤지고 資本蓄積이 미약했던 독일은 산업자본의 동원을 위해 産業資本家와 金融資本家の 합자로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금융자본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은행들이 특정산업에 專門化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독일은행은 政府政策에 맞추어 기업의 對外進出 및 제1

차대전 이후의 經濟復舊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Hausbank의 주된 機能은 다음과 같다.

多様な 유니버설뱅크 서비스의 提供 :

Hausbank는 상업금융은 물론이고 주식발행 주선, 회사채 인수 등 증권업무를 포함한 모든 企業金融業務를 제공한다.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고객기업의 사업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의 促進者 역할을 수행한다.

相互株式保有 및 株式議決權의 代理行使 : 은행과 기업간에는 상호 株式를 보유하지만 그 규모는 상상적인 것에 크게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은행들은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예탁한 株式에 대하여 임의로 議決權의 代理行使權(proxy right)을 가진다.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大企業의 경우 은행들은 80% 이상의 주주총회 議決權을 가지는 것은 보통이며, 특히 3大銀行에 의결권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Hausbank는 經營者의 선임, 監督理事會의 구성 등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監督理事會(supervisory board)에의 參與 : 기업들은 통상 執行理事會와 監督理事會를 두고 있으며, Hausbank는 監督理事會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주로 기업의 財務關聯 諮問을 한다. 監督理事會는 株主代表 외에 勞組를 비롯한 從業員 대표가 주

로 참여하며, 執行理事會의 이사선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을 갖지만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권이 소액주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된 반면 少數의 은행들이 大株主를 형성하거나 代理議決權을 크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最終貸付者 및 企業救濟機能 : Hausbank는 암묵적으로 고객기업에 대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업의 부도위기사에는 救濟를 위한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강구한다. 貸出金의 出資轉換, 政府의 支拂保證을 통한 추가대출의 컨소시엄 구성, 賣却周旋 등이 그러한 노력이다. 기업이 회생한 이후 Hausbank는 上場이나 賣却을 통해 구제노력에 대한 補償을 받기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보호 때문에 기업의 破産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은행의 이러한 救濟努力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倒産에 따라 은행에 큰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大企業 이외에는 Hausbank가 주도적인 긴급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노력에 소극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은행의 救濟努力에도 불구하고 回生에 실패하여 은행이 큰 손실을 입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위에서 Hausbank의 機能을 살펴보았는 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憂慮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중 가

장 심각한 것은 Hausbank가 고객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干與하여 경제전반에 바람직하지 못한 影響을 미치고 大銀行을 중심으로 經濟力이 集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주로 Hausbank의 監督理事會 참여 및 주주총회에서의 代理議決權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Hausbank가 일원으로 참여하는 監督理事會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전망 및 경영상의 주요 문제에 대해 執行理事會의 결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집행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法定 최저기준인 年 2회 監督理事會를 개최하는데 그치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Hausbank의 監督理事會 참여가 情報의 非對稱性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객기업으로 하여금 證券市場보다는 Hausbank 차입 등 銀行借入에 보다 의존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들 기업의 資金調達構造와 競爭的인 은행대출시장을 감안할 때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독일 大企業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로 代理權에 의해 행사되는 3大銀行의 議決權 비중이 매우 높다(86년 100大企業의 경우 45%). 따라서 少數의 금융자본이 경제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社會的 厚生에

反하여 銀行 혹은 經營者의 利益을 추구할 수 있으며, 특정고객을 위한 경쟁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Hausbank가 기업에 비해 우월한 情報를 가지고 指導力을 행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 같다. Hausbank로서는 監督理事會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株主總會에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또한 은행의 企業支配에 대한 政治·社會的 反感을 우려하여 상당히 自制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이후에 독일의 은행과 기업간의 Hausbank관계는 弱化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監督理事會 일원으로서의 자문·지도하는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기업도산위기시의 對應姿勢나 能力面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능약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技術進歩에 따라 은행의 監視力量이 기업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투자활동을 先導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업의 財務環境이 은행차입의존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한 점을 들 수 있다. 74년 이후로 기업들이 退職積立金을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金融國際化의 추진에 따라 독일 대기업들의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대되었다. 또한 은행의 企業株式 所有는 악의적인 買收企圖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업간 합병이 은행의 중요한 업무가 된 상황에서는 심각한 利害相衝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식보유를 줄여가도록 하는 誘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銀行들은 國際化와 동시에 종래에 貯蓄組合이 주도해 왔던 地域金融 및 中小企業金融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銀行本부와 大企業과의 중앙집권적인 관계에서 中小企業과 地域店舖간의 分權化되고 地域密着的인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 中小企業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Hausbank의 전통적인 結束關係는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도의 專門技術을 경쟁력으로 하는 독일 中小企業의 경우에 적극적인 監視機能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소기업의 經營危機時에 적극적인 개입과 救濟를 약속하기에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日本의 主去來銀行

일본의 主去來銀行關係는 독일의 Hausbank에 비해서 고객기업과의 結束力이 좀더 강하다. 그 관계는 단순한 金融去來關係를 넘어서 相互株式保有, 人的交流 등을 통한 監視 및 經營監督까지를 포함한다. 일본에서의 主去來銀行制度의 형성은 戰時體制下에서 자금의 동원과 운용을 政府가 집중통제하면서 1943년에 기업별로 指定

銀行을 도입하고, 전후복구기인 40년대 말과 50년대에 政府가 강력한 産業調整機能을 담당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政府의 암목적 調整役割이 50년대 이후에 主去來銀行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0년을 전후하여 重化學工業을 지원하기 위해 권장되었던 신디케이트貸出이 主去來銀行制度의 출현에 미친 영향이 강조되기도 한다. 50년대 중반에 와서 終戰前의 연고에 따라 相互株式保有를 통해 系列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銀行들도 기업예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系列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戰後復舊期에 國家開發計劃을 기업 및 은행의 利害關係調整을 통해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政府는 貸出신디케이트 構成에 간여·지도하였다. 한편으로 60년대초 資本市場開放을 앞두고 外國투자자들의 일본기업 買收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간의 相互株式保有, 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이나 關聯企業들의 대기업 주식보유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貸出신디케이트는 통상 이들 大株主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의 장기적인 結束關係가 정착되어 갔다. 主去來銀行은 아래와 같은 주요 役割을 수행한다.

1) 決濟去來 : 주거래은행은 고객기업의 決濟銀行으로서 항상 기업의 結제동향과 자금사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情報上의 우위를 가진다.

2) 貸出 : 거래은행은 통상 고객기업 총 차입금의 15% 내외를 점하여 最大 자금공급자이다. 대부분의 大規模貸出은 신디케이트의 형태를 취하고 주거래은행은 主幹事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거래은행이 기업에 대한 監視機能을 맡기 때문에 다른 參與 金融機關들은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험이 적은 대출기회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3) 債券關聯서비스 : 고객기업의 會社債發行과 관련하여 상당부분을 引受하며, 국내발행의 경우 담보물의 관리, 필요시 채권자회의 주관 등 受託業務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수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不渡危機時 경영에 介入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 海外債券發行의 경우는 해외의 子會社를 통해서 幹事團을 구성한다.

4) 相互株式保有 : 주거래은행은 통상 고객기업의 5大株主 안에 속하며, 은행주주로서는 最大株主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거래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한 株式을 賣却하지 않는다. 개별주식의 보유한도는 5% 이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보유주식을 통해 고객기업의 經營權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5) 經營資源의 供給 : 주거래은행은 고객기업에 監事나 外部理事를 공급한다. 그러나 現職 은행원이 辭職되는 것은 기업도산위기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退職 은행직원이 고객기

업의 任員으로 고용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기업의 資金事情이 악화되면 주거래은행의 經營干與는 증대되며, 사정이 심각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경영자를 交替하거나 은행인력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일본의 主去來銀行制度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제도가 갖는 잠재적인 強點 때문이며, 그 강점은 무엇보다도 은행 監視機能의 효율성 및 리스크分擔機能이라고 할 것이다. 情報의 비대칭성 및 정보관리비용의 완화, 道德的 解弛 및 채무불이행 가능성의 감소, 負債費用의 절감, 企業整理에 있어서의 損失最小化, 危險性이 큰 사업에의 과감한 投資 등은 다 이러한 強點에서 연유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企業들로서 주거래은행의 監視를 수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金融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외에 기업의 不渡危機時에 은행의 적극적인 救濟努力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監視機能을 事前·中間·事後監視로 구분한다고 할 때, 英·美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이들 감시기능이 商業銀行과 投資銀行(인수업무), 信用評價會社, 法院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 반해, 日本에서는 主去來銀行이 모두 수행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60년대 이전의 事前監視機能은 정부 財政投融資計劃과 長期信用銀行들이 주로 담당하였으며, 정부-은행-기업간의 밀접한 情報共有에 의하여 都市銀行들의 事前監視

〈表 7〉 企業의 財務狀態와 主去來銀行關係의 性格

	企業의 財務狀態			
	超優良	優 良	平均的	不 良
決濟去來	○	○	○	○
資金貸出		△	○	◎
債券發行關聯 서비스		○		
企業의 株式保有	○	○	○	○
經營情報·經營資源 供給	△	△	○	◎

註 : ◎ 매우 중요, ○ 중요, △ 약간 중요.

資料 : Aoki, Patrick, and Sheard(forthcoming).

能力(주로 技術을 흡수·발전시킬 수 있는 經營·組織上의 能力 점검)이 배양되어 왔다. 中間監視가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貸出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情報 외에 決濟去來, 株主의 자격, 銀行人力의 공급 등을 통해 內部情報를 확보할 수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주거래은행의 리스크分擔機能은 事後監視過程에서 주로 나타난다. 고객기업이 倒産危機에 빠졌을 때 주거래은행은 추가자금공급 등 救濟措置를 강구하거나 法院의 파산절차나 企業整理를 추진하거나 하는 選擇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예외 없이 자신의 대출금비용 이상의 負擔을 진다. 債權請求權의 우선순위를 불리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소형 지방은행 등 일부 대출기관에게는 代位辨濟까지 보증해야 한다.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 주거래은행은 正常時의 대출비중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리스크 負擔은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事前·事後監視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誘因이 된다. 回生可能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기업을 救濟하는 것은 회생후에 부분적으로라도 구제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期待, 相互株式保有에 따른 공통된 利害關係, 위임된 監視者(delegated monitor)로서의 評判의 중요성이 등이 작용한다. 당국의 進入規制 등으로 銀行에 超過利潤이 허용되었다고 한다면 주거래은행의 企業救濟費用은 銀行利用者가 골고루 分擔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기업간의 밀접한 結束關係는 副作用과 非效率性도 동시에 수반한다. 이러한 결속관계는 기본적으로 排他的이고 透明性이 결여된 관계이기 때문에 각종의 不公正하고 非競爭的인 행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硬直性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 계속 지원되거나 整理되어야 할 기업이 정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Hausbank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主去來銀行關係도 環境의 變化에 따라 점차 變貌해 가고 獨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 70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가 低成長期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外部資金依存이 감소한데다 金融規制의 완화에 따른 국내외시장에서의 會社債發行 증가, 활발한 增資 등으로 銀行借入需要가 위축되었다. 엔貨強勢는 해외자금조달을 더욱 촉진하였다.
- 광범한 金融規制의 완화로 銀行간의 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주거래은행 관계의 프리미엄(倒産危機時的 리스크分擔機能 등)이 저하되었다.
- 일본 대기업들이 技術能力의 향상을 바탕으로 世界市場에서 치열하게 競爭하게 됨에 따라 高度의 기술적·금융적 專門性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은행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事前監視能力)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環境變化로 인해서 은행-기업관계에서 企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主去來銀行關係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貸出신디케이트 構成에 있어서 주거래은행의 主導權이 약화되는 대신 企業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은 決濟去來를 갖는 2개 이상의 機能別 주거래은행을 유지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Core Bank라고 불리는 이들 은행에게는 기업의 금융서비스나 倒産危機時的 救濟負擔이 대체로 일정하게 배분된다. 물론 대출규모, 상호주식보유,

은행출신 任員의 유무 등에 있어서 1위 은행과 기타 은행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2위 이하의 Core Bank에 대해서는 은행의 特性에 따라 주로 專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일본의 은행-기업관계는 主去來銀行이 가지는 폭넓은 結束關係의 틀을 유지하되, 양자 相互間에 보다 收益指向의이며 伸縮的인 성격을 가미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와 貸出債權의 流動化 등으로 無限責任的인 結속關係를 유지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기업들은 그 系列構造와 금융기관과의 相互株式保有 등 경직적인 結束關係로 인해서 기업이 正常狀態에 있을 경우 經營監督의 空白과 상대방의 非效率性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은행과 기업간의 結束關係의 약화에 따른 企業監視機能(經營權에의 간여는 통상 기업의 資金事情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發動되지만)의 저하는 經營監督의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VI. 바람직한 銀行-企業關係의 摸索

우리는 위에서 한 나라의 은행-기업관계가 다분히 歷史的인 產物이며, 이와 관련

된 規制의 틀도 오랜 동안의 經驗을 통하여 발전시켜 온 것임을 보았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운영되어 온 制度라 할지라도 文化와 經濟·金融與件 및 관련된 制度的 環境이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성과를 기약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리 銀行들은 독일이나 일본의 은행들처럼 企業과의 結束關係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英·美型의 制度가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나라에서 은행은 企業의 短期資金供給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企業금융에 있어서 證券市場의 기능이 중요하고, 企業에 대한 監視役割도 銀行뿐이 아니라 여러 證券關聯機關들이 分擔하고 있다. 이런 制度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金融· 자본市場이 競爭的이고 情報의 效率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어떠한가? 企業의 會計·監査·公示·信用評價 등과 관련된 制度들은 아직 극히 미흡하다. 증권市場은 아직 다양성과 자산의 축적면에서 발전정도가 낮고, 內部者去來·價格操作 등과 같은 不公正去來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情報의 非對稱性이 크고, 정확한 정보획득의 費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利害相衝의 남용 및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企業에 대한 효과적인 監視를 통해 정확한 情報를 생산하고 信用分析을 행하는 銀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는 은행의 이러한 중요한 機能이 정부의 각종 規制와 干涉으로 인하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소홀히 되어 왔다. 따라서 은행과 企業간의 바람직한 結束關係를 어떻게 유도해 가느냐가 우리의 政策課題라 하겠다.

1. 與信管理의 緩和 및 金融自律化의 擴大

은행-기업간의 바람직한 關係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은행의 신용평가 및 企業監視機能을 위축시키고 兩者間의 自生的인 결속關係를 制約해 온 여러가지 規制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첫째는, 기존의 大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制度를 점진적으로 완화·철폐하는 것이다. 둘째는, 은행 資產運用의 자율성을 포함한 金融自律化를 서둘러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與信管理 및 主去來銀行制度의 改善 : 獨逸이나 日本에서의 밀접한 은행-기업관계는 은행이 고객기업의 투자활동 및 금융수요를 주도적으로 支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여신관리 및 주거래은행제도는 대기업의 지나친 與信偏重과 企業확장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外部로부터 부과된 것이다. 企業활동의 規制를 겨냥한 制度가 은행-기업간의 自生的·協力的인 關係의 발전을 저해해

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래은행」이라고 할 만한 顧客關係를 형성해 오지 못하였다. 銀行은 고객기업의 일시적 資金難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企業도 여유자금의 預託이나 手數料서비스 등을 주거래은행에 集中시키지 않는다. 특히 80년대에 와서 規制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 온 이 제도는 더 이상의 存在意義가 미약하다고 하겠다. 그간 편중여신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온데다, 汎世界的 競爭이 심화되어 가는 변화된 기업환경에서 이러한 경직적 규제제도는 기업의 對應能力을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신관리대상을 10大 企業群으로 축소하는 등의 정부방침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여신관리제도가 목표로 하는 經濟力集中 완화나 業種專門化는 공정거래법, 공업발전법 등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不動產投機抑制는 관련세법이나 토지공개념관련법 등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與信管理는 은행의 健全性 유지를 목표로 한 同一企業群에 대한 여신한도운용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金融自律化의 擴大 : 은행의 政策金融負擔을 줄이는 것은 은행자산운용의 自律性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협력적인 은행-기업관계의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개발기관에 대한 대출, 주택금융,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 대출, 외화대출 등 넓은 의미의 정책금융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市場의 不完全性을 완화하기 위해서 회임기간이 길고 危險性이 큰 사업이나 外部效果가 큰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다. 또한 社會的 考慮에서 취약부분에 금리보조적인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은행보다는 國家財政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밖에 中小企業 義務貸出比率 등도 점차 간접적인 유도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가급적 金利를 자유화함으로써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直接規制에 의한 通貨管理도 은행과 고객기업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 큰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예정되었던 은행차입이 갑자기 동결되어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등의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間接規制方式의 정착과 豫測可能한 통화운영이 시급하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일선 店舖長의 대출관련 재량권을 확대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있는 監視를 유도하고, 銀行長人事의 자율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競爭 및 經營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銀行經營評價를 바탕으로 점포설치·증자 등을 差別化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2. 銀行 및 企業의 所有 · 經營支配構造

은행-기업간의 협조적인 결속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手段의 하나로 독일·일본과 같은 株式의 相互保有를 허용·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債權銀行이 동시에 株主가 되는 것은 소유주와 채권자간의 代理人問題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債權者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되도록 危險性이 작은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할 것이나, 은행이 동시에 債權者·株主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歪曲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銀行은 自己資本의 100% 한도내에서(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은 예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특정기업의 株式은 총발행주식의 10% 한도내에서 보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은 機關投資家로서 유가증권운용을 위해 기업의 株式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회사와의 고객관계를 기초로 하여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동일인의 市中銀行株式 소유는 의결권이 있는 총발행주식의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地方銀行의 경우에는

3) 한미·하나·보람·평화은행은 대주주가 9~18인, 이들의 지분합계는 49~65%에 이르는 반면, 신한·동화·동남·대동은행은 대주주가 2~9인, 지분합계는 15~17%에 머물고 있다.

15%내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정부의 주식소유나 외국과의 合作投資에 의해 설립된 은행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非銀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은행의 株式分布를 보면(93년말 혹은 94년 중반 현재) 5大 市中銀行 및 10개 地方銀行의 경우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는 평균 12사이며 이들의 持分合計는 시중은행이 평균 35%, 지방은행은 45%에 달하고 있다.³⁾ 大株主의 구성은 일부 個人株主를 제외하고는 大企業群 및 투자신탁,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과 증시안정기금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企業에 의한 銀行株式의 소유는 主去來關係 등의 結束關係와는 관련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3년말 현재 30大企業群 중에서 主去來銀行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기업군은 8개(평균 지분율은 2.5%)에 불과하다.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銀行의 企業株式 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金俊經(1991)은 기업의 銀行不實債權을 株式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企業이 銀行의 株主로서 은행경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同一人 소유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金融專業企業家에게는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하여 經營革新을 先導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銀行不實債權의 株式轉換 : 채권은행의 고객기업에 대한 監視活動에 誘因을 강화

〈表 8〉 大株主 銀行株式 保有現況(%)

은 행	5대 기업군	6~30대 기업군	기 타	합 계
제 일	11.8(3)	1.1(1)	30.8(10)	43.7
한 일	11.2(4)	4.7(1)	24.5 (9)	40.4
조 흥	5.0(2)	2.2(1)	30.4 (9)	37.6
서울신탁	5.0(2)	3.3(2)	20.4 (7)	28.7
상 업	6.8(1)	1.1(1)	14.8 (6)	22.7
한 미	15.0(2)	1.1(1)	49.5(10)	65.5
외 환	-	-	65.3 (1)	65.3
하 나	6.1(2)	3.7(2)	52.6(14)	62.4
보 람	11.2(2)	16.2(2)	26.5 (9)	53.9
평 화	1.3(1)	-	47.6 (8)	48.9
동 화	-	-	16.6 (9)	16.6
신 한	9.4(4)	-	6.9 (4)	16.3
동 남	-	-	15.2 (2)	15.2
대 동	-	-	15.2 (2)	15.2
10개 지방은행평균	4.2(0.8)	7.4(1)	33.0(9.7)	44.6

註 : () 안은 기업수. 大株主는 1% 이상 지분소유자.
 資料 : 財務部, 「第170回 定期國會 財務委員 要求資料」, 1994.

하는 방안으로서 回生可能性이 큰 기업의 은행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금을 償還優先株로 전환하였다고 하면 企業으로서는 채무상환 압박을 해소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銀行으로서는 최우선적인 채권변제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보통주보다 우선 配當을 받고 회사가 정리되는 경우에도 보통주주보다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유통시장에서 이 주식을 매각하여 은행자산의 流動性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될 경우 양도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등의 권리도 부여되어 기업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株式轉換比率에 합의하기 쉽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상환우선주의 매각이 어려운 制約은 있으나, 고객기업의 경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監視와 指導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代案이라고 하겠다.

産業資本의 金融産業支配에 대한 憂慮 :
 大企業群이 은행경영을 지배할 경우 우수한 人的資源과 經營文化를 접합하여 효율적인 責任經營을 기대할 수 있고 情報의 共有 등을 통한 範圍의 經濟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업자본의 은행지배는 지나친 經濟力의 集中, 利害相衝의 남용, 금융산업의 不安定性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중 經濟力集中이나 利害相衝의 문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進入障壁이 완화되어 競爭이 촉진된다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비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군일수록 이해상충을 남용하는 것을 自制할 유인이 크다. 잘못하다 기업의 評判을 떨어뜨려서 모든 영업부문에서 경쟁기업에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非金融業이 금융업에 비해서 危險性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업군 非金融業 전체의 組合은 금융업보다 위험성이 작을 수도 있다. 금융업 및 비금융업 利潤간에 否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기업군의 금융업 진출은 기업군 전체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렇다면 우리의 現實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企業群들은 비금융시장, 특히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상당히 市場支配的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설령 금융시장이 완전 경쟁적일지라도 금융·비금융업이 結合되면서 비금융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金融商品을 끼워파는(tie-in sales)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금융업에의 進入障壁이 존재하고 은행대출에 金利補助의인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주된 受惠者인 기업군이 은행경영을 지배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다. 경쟁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거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축적한 情報를

비금융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寡占株主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군의 談合에 의한 은행경영 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同一人 持株限度를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향후 金融市場에서 自律과 競爭이 심화되고 非金融業에 있어서도 開放化의 진전으로 市場支配的인 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면 대기업군의 金融支配에 따른 우려는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金融專業企業家에 대한 所有規制 緩和 :
만일 경제력집중이나 이해상충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銀行持分所有 規制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產業資本家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業種多邊化의 정도가 큰 기업군일수록 利害相衝의 남용을 감시·규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金融專業企業家나 소규모 기업군에게는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다양한 금융기관을 망라한 金融專業群은 그 나름대로 이해상충의 남용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範圍의 經濟性에 따른 경영효율이 기대되고 있다. 責任經營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갈 종합적인 金融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정부는 금융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金融專業企業家에게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을 12%까지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가는 個人으로 한정되며,

30大 기업군의 계열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자격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企業의 참여가 배제되고 對象銀行도 5개 市中銀行 위주로 7개에 국한시킨 것은 그만큼 金融 專業家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株主協議會 : 은행의 專門經營人市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責任經營體制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경영을 효율적으로 監視하기 위한 하나의 代案으로 株主協議會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주주가 株主總會를 통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任員陣과 株主協議會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영상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가자는 것이다. 주주들 중에서도 大株主는 監視費用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經驗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경영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대주주의 상당부분이 大企業群이기 때문에 이들이 談話에 의해 은행경영에 과도하게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株主協議會는 產業資本 대주주 이외에도 機關投資家, 우리社株組合, 少額株主 대표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相互牽制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權限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3. 企業의 財務·信用狀態와 銀行과의 關係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는 靜的인 것이 아니고 兩者의 수요와 능력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기업이 설립되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金融需要는 달라지게 되며, 거래 은행으로서도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도능력이 한결같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자가 서로 相對方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結束關係는 강화되지만,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때는 오직 필요에 따라 거래가 성립하는 競爭的인 관계를 갖게 된다.

超優良企業의 Core Bank關係 : 한국 대기업군의 우량기업들과 기타의 超優良企業들은 海外로부터의 저렴한 차입이나 資本市場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향후에 銀行借入依存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日本의 우량대기업들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회계·증권분석·신용평가 등의 능력이 향상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정확한 企業情報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非對稱性이 완화에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證券市場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역할은 貸出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함한다.

세계화되어 가는 大企業이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은행은 숫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은행의 專門性이나 능력에 따라 몇 개의 市中銀行들과 동시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런 관계는 日本 우량대기업들이 가지는 Core Bank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競爭의인 관계라고 하겠다. 기업으로서는 특정은행과의 結束關係로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은행과 어느 정도의 距離를 두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 은행으로서는 보다 나은 기업을 顧客으로 확보하고 기존의 고객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로 競爭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와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排他的이거나 拘束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은행간 競爭의 결과로 비교적 쉽게 변화할 수 있다.

향후 兼業化의 진전으로 業務範圍가 확대됨에 따라서 은행은 증권업무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監督機關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강제된 관계이기는 하지만 與信管理制度의 틀 속에서 기존의 主去來銀行은 그간 나름대로의 情報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手數料 收益 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協力關係를 도모할 수 있다. 문제는 大企業群들의 세계화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情報와 증대된 金融危險에 대응하는 새로

운 技法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技術進歩가 빠르고 세계시장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의 각종 規制 가운데서 업무능력을 제대로 확충해 오지 못한 우리 은행들로서는 큰 挑戰이 아닐 수 없다.

信用이 良好한 大企業 및 有望中堅企業의 主去來銀行 關係 : 은행차입에 대한 우량대기업들의 수요가 감소하여 은행대출시장에서의 超過需要가 해소되면 은행들은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大企業이나 성장성이 큰 中堅企業들과의 고객관계에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아직 海外에서 쉽게 차입할 수 있을 만큼의 信用度에는 미치지 못하고 資本市場에서의 자금조달도 한계가 있다. 財務構造의 취약성이나 事業展望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信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경우는 회계 등 기업경영의 여러 측면에서 透明性이 미흡하여 情報費用이 높고,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固定費用 때문에 去來費用이 높은 것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借入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서 日本의 主去來銀行과 같은 結束關係를 형성해 가기에 적합한 기업들이다.

은행으로서는 이들이 상당기간 銀行貸出의 주된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監視를 할 誘因

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련한 諮問과 金融去來需要가 증대됨에 따라 은행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으로서의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한 은행에 集中시키고 기업내부정보를 제공하여 監視를 허용하는 대신, 자금경색이나 도산위기에 있을 때 긴급대출·구제금융 등 기업의 回生을 위한 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행이 企業內部者의 지위를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監視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기업의 株式을 보유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에 예상되는 대출 및 주식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現實性이 없지도 않다.

은행대출시장이 아직 초과수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이미 貸出關係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危險資産에 투자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업과 대출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危險分散面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출시장에서의 초과수요가 해소되고 優良顧客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향후 주식시장에서 기업 經營權保護를 위한 대량 주식매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이 買收되어 경영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거래은행의 株式保有를 희망하게 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거래기업의 大株主로서 外部理事 등으로 內部者의 지위를 갖고 경영자문 및 監視機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經營支配權을 가진 大株主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外部理事의 자문 등 他株主의 경영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中小企業과 銀行 : 중소기업은 해외차입이나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하여 銀行借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銀行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매력있는 고객이라고 하기 어렵다. 危險性이나 情報의 제약이 크데다 최근까지 貸出金利面에서 큰 차등을 두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량기업들의 은행차입 의존이 줄어서 은행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고 소위 貸出세일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은행은 중소기업을 주요 顧客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은행이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地域金融機關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店舖長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역에 密着된 경영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들과의 안정된 거래관계를 통하여 情報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세자료의 誠實申告에 대한 세제상의 誘因을 통해 會計資料의 信賴性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信用貸出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擔保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貸出審査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과 納品 등 거래관계에 있는 他企業들이 실제로 중요한 情報源이 될 수 있으며, 은행은 이들 前·後方關係의 기업들과 貸出審査機能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중소기업들과 장기적이고 긴밀한 結束關係를 형성해 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倒産危險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救濟努力을 해야 하는 것은 은행으로서 지나친 부담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대부분 上場企業이 아니기 때문에 株主로서의 企業內部者의 위치를 확보할 수 없고, 店鋪人力의 한계를 감안할 때 기업경영에 대한 諮問·監視役割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은행의 주된 고객은 아무래도 기업설립 이후 다른 지역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事業基盤이 갖추어진 기업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成長에 따라 차입규모가 커지고 금융수요도 多樣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규모 지역금융기관보다는 은행과의 거래관계에 比重을 두어가게 된다.

Ⅶ. 結 語

은행과 고객기업과의 장기적인 結束關係는 우려되는 副作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利點이 큰 것으로 보인다. 決

濟銀行으로서, 또한 다른 채권은행들을 대신한 委任된 監視者로서 지속적인 去來關係를 통하여 고객기업에 대한 情報管理 및 監視의 費用을 절감할 수 있다. 相互株式保有 등을 통해 은행이 企業內部者의 위치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監視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영자의 道德的 解弛를 방지하고 負債費用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고객기업이 倒産危機에 있을 때 最終貸付者로서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構造調整努力을 주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를 分擔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危險性이 크고 懷妊期間이 긴 사업을 비교적 과감하게 추진하고, 경제전체로서 投資擴大와 產業競爭力提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銀行들은 고객기업들과 이러한 結束關係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다. 大企業群과의 主去來銀行關係는 與信管理을 위해 외부적으로 부과된 제도로서 양자간에 自發的이고 協力的인 관계를 발전시켜오는 데 오히려 제약이 되어 왔다. 또한 정책금융의 확대, 경직적인 통화관리, 金利規制, 정부의 銀行人事에의 간여 등으로 은행의 自律的인 資産運用과 貸出審査機能이 저해되고 은행대출에 대한 지나친 超過需要를 발생시킨 것도 은행-기업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與信管理制度를 점차 축소·철폐하고 金融自律化를 확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향후 經濟成長이 둔화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自己資本蓄積이 진전되면서 超優良大企業들의 外部資金依存은 감소될 전망이다. 더구나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라 저렴한 外資調達을 확대해 가고, 國內에서도 銀行借入보다는 資本市場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國際化가 가속되고 은행의 業務領域이 확대되어 가면서 기업은 종래의 借入爲主에서 탈피하여 국제금융·증권관련업무 등에서 몇 개의 은행(Core Bank)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다. 우리 은행들이 기업의 同伴者로서 이들의 國際化를 지원하고 다양해지는 金融需要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外國銀行이나 국내 證券機關과의 業務提携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우량대기업의 銀行借入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은 中小企業貸出을 늘려갈 것인바, 店舖長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지역에 密着된 경영으로 고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監視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危險度가 높고 재무구조나 경영자의 자질 등에 대한 情報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監視가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倒産危機時 구제금융제공 등 리스크를 分擔해야 하는 結束關係를 발전시켜 가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信用이 양호한 기타 大企業과 中堅企業들은 아직 海外나 國內資本市場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장기적 結束關係를 발전시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顧客企業의 株式을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監視機能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게 危險의 最小化 전략을 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誘因을 완화할 수 있다. 향후 은행대출시장의 超過需要가 해소되고 기업들의 經營權安定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은행의 고객기업주식 보유가 촉진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한 비교적 우량한 은행 不實債權이 株式轉換될 수 있도록 하는 誘因策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金融開放에 대처하고 기업의 國際化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등 金融革新을 유도하기 위해서 金融專業企業家の 책임경영 여건을 마련해 주고 株主協議會 등을 활용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중은행의 寡占株主를 형성하고 있는 大企業群들이 은행경영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동일인 株式保有限度を 하향조정하고, 여기에 예외가 인정되는 金融專業企業家에는 企業(법인) 및 30대 기업군의 계열주 특수관계인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現實的인 選擇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市場開放이 확대되고, 특히 金融市場의 競爭이 심화될 경우 產業資本의 金融支配로 인한 잠재적 폐해는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國民銀行,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各年度.
- 金融産業發展審議會(金融制度改編研究小委), 『金融制度改編研究』, 1993.
- 金東源, 「企業集團과 金融機關의 關係」, 기업집단정책의 발전과제에 관한 한국산업조직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서울, 1994년 6월 17일.
- _____, 『銀行貸出市場에서의 政府·銀行·企業關係의 再摸索』, 研究叢書 87-92-02, 한국경제연구원, 1992.
- 金俊經, 「銀行不實債權 整理方案에 대한 考察」, 『韓國開發研究』, 제13권, 제1호, 韓國開發研究院, 1991.
- 文宇植, 「中小企業의 貸出市場接近 擴大方案」, 정책보고서 94-13, 韓國開發研究院, 1994.
- 宋貞煥, 『주거래은행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실증연구- 자본코스트 저하기능 및 리스크 분담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1994.
- 李德勳, 「地方經濟의 活性化와 地域金融機關의 役割 提高方案」, KDI 정책포럼, 제56호, 韓國開發研究院, 1994.
- 李愚寬, 「金融市場의 監視機能과 銀行-企業의 새로운 關係」, 연구조사자료 90-93-05, 한국경제연구원, 1993.
- 張鉉俊, 「金融機關과 企業의 所有構造 및 새로운 關係定立」, KIF金融Paper 94-02, 한국금융연구원, 1994.
- 財務部, 「第170回 定期國會 財務委員 要求資料」, 1994.
- _____, 『財政金融統計』, 各號.
- 丁炳然·梁英植, 『韓國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2.
- 韓國經濟研究院, 『韓國企業의 財務行態와 金融慣行에 대한 研究』, 研究叢書 92-92-07, 1992.
-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各號.
- _____, 『국민계정』, 各年度.
- _____, 『기업경영분석』, 各年度.
- Aoki, Masahiko, Hugh Patrick, and Paul Sheard,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An Introductory Overview," in M. Aoki and H. Patrick(eds.),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and Its Relevance for Developing and Transforming Socialist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 Aoki, Masahiko, "Toward an Economic

- Model of the Japanese Fi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1), 1990, pp. 1~27.
- Cable, John, “Capital Market Information and Industrial Performance: The Role of West German Banks,” *The Economic Journal*, 95, 1985, pp. 118~132.
- Cho, Yoon-Je and David C. Cole,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s Structural Adjustment,” in V. Corbo and S. Suh(Eds.), *Structural Adjustment in a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Lessons from Korea*, 1992.
- Cole, David C. and Yung Chul Park,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Working Paper No. 790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1979.
- Diamond, Douglas W.,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1984, pp. 393~414.
- Hoshi, Takeo, A. Kashyap, and D. Scharfstein, “Corporate Structure, Liquidity,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Japanese Industrial Grou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1991, pp. 33~60.
- Leland, Hayne E. and David H. Pyle, “Information Asymmetries,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32, 1977, pp. 371~387.
- Nam, Sang-Woo, “The Principal Transactions Bank System and a Search for a New Bank-Business Relationship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Annual 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Jointly Sponsored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an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June 15-17, 1994.
- _____, “Readjustment of the Business Boundarie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n Korea,” KDI Working Paper No. 8822,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8.
- Patrick, Hugh T., “The Relevance of Japanese Main Bank System,” in M. Aoki and H. Patrick(eds.),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and Its Relevance for Developing and Transforming Socialist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forthcoming)
- Ramakrishnan, Ram T. S. and Anjan V. Thakor, “Information Reliability and a Theory of Financial In-

- termedi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1984, pp. 415~432.
- Sheard, Paul, "The Main Bank System and Corporate Monitoring and Control in Japa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1, 1989, pp. 399~422.
- Smith, Roy C. and Ingo Walter, "Bank Industry Linkages: Models for Eastern European Economic Restructuring,"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New Europe: Evolving Economics and Financial Systems in East and West* Sponsored by the Société Universitaire de Recherches Financières, Berlin, Germany, October 8-10, 1992.
- Steinherr, Alfred and Christian Huvencuers, "Universal Banks: The Prototype of Successful Banks in the Integrated European Market?" Research Report No. 2,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1990.
- Stiglitz, Joseph E., "Government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NBER Working Paper No. 3669, 1991.
- _____, "Credit Markets and the Control of Capita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7, 1985, pp. 133~152.
- Williamson, Oliver, *Markets and Hierarchies*, The Free Press, New York, 1975.
- Williamson, Stephen D., "Costly Monitoring,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Equilibrium Credit Ration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8, 1986, pp. 159~179.